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 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,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을 명시하는 등 과태료의 가중 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입법예고(2020. 12. 14. ~ 2021. 1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사목 중 “100분의 90”을 “100분의 95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“100분의 90”을 “100분의 95”로 하며, 같은 호 파목 중 “타목 1)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”을 “타목2)에도 불구하고”로, “100분의 90”을 “100분의 95”로 한다.

별표 5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급여비용의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·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091